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4. 3. 3.
행 정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2월 13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04년 2월 23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제102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2004. 3. 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최병찬)

가.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이 개정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식품진흥기금 용자대상자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의무적으로 거치던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필요한 경우에만 거치도록 임의절차로 변경함.
-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와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함.

다. 참고사항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제71조의2,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8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창수)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의 지급 근거에 의거 조례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식품진흥기금의 용자대상자 결정 등 선정절차의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과 시기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2
------------	----

제출년월일 : 2004. 2. 13.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 이유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이 개정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식품진흥기금 용자대상자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의무적으로 거치던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필요한 경우에만 거치도록 임의절차로 변경함.

나.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와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제71조의2,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8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04. 1. 13. ~ 2004. 1. 31.)결과 : 의견 없음

다. 관련부서 협의 : 해당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을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시민신고 포상”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용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심의회 심의를 거쳐 용자적격자를 선정하고 용자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용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의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용자대상 적격자를 결정 하되,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의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및 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u>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u> 6. (생략) 7. (생략) 8. (생략) 제16조(유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생략)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유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자 적격자를 선정하고 유자하여야 한다. <신설> 제5장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u>위해식품 등에 대한 시민신고포상</u>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제16조(유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현행과 같음)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유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u>신청내용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유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되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의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u>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